

충청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

발의년월일 : '99. 7. 6.

발 의 자 : 조례정비특별위원장

의안 번호	133
----------	-----

제안이유

- 현 장학금지급조례의 장학금액은 '93년도에 정한 것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 하는 것임.

주요골자

- 제6조 장학금액을 현실에 맞게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조정.

첨 부

- 충청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부
- 신구조문 대비표 1부

충청북도의 용소방대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중 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의 용소방대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 중 “60만원”을 “100만원”으로 한다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장학금액) 중·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을 공납금 전액으로 하며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매년 <u>60만 원</u>으로 한다.</p>	<p>제6조(장학금액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u>100만원</u></p>